

建築法 質疑応答(6)

建設部建築課

解説：韓 奎 峰

62. 公園境域内の施設(활 쓰는 곳) 建築

(質疑要旨)

사정(활 쓰는 곳)을 令 第143條 “別表10” 第1項 第2号에 該當하는 市民健康을 為한 運動施設로 보아 公園境域内에 建築할 수 있는가?

(質疑者：京畿道)

(回信内容)

建築 444.1~18997(76. 9. 21)

貴 質疑上의 사정(활 쓰는 곳) 建築物이 一般人의 利用에 供하는 경우라면 令 第143條 “別表10” 第1項 第2号에 該當하므로 公園境域内에 建築할 수 있음. 끝

63. 施工中인 工場의 垂直増築

(質疑要旨)

令 第168條의 2의 規定에 適合하지 않으나 大統領令 第8090号 改正令이 公布(76. 4. 15)되기 前에 建築許可를 받아 施工中인 工場建築物을 増築코져 할 때 平面增築을 하게 되면 令 第168條의 3의 規定에 依한 植樹面積(垈地面積의 15%)의 確保가 어려운 경우 垂直增築을 為한 設計變更許可를 할 수 있는가?

(質疑者：서울特別市)

(回信内容)

建築 444.1~18166(76. 9. 7)

大統領令 第8090号 建築法施行令이 改正되기 前에 適法하게 建築許可를 받아 施工中인 工場建築物을 增築하고자 할 때 平面增築을 하면 令 第168條의 3의 規定에 依한 植樹平積 確保가 不可能하고, 垂直增築을 하는 경우에 그 面積 確保가 可能하다면 이 때 令 第168條의 2의 規定에 不適合하게 施工中인 工場을 垂直增築케 하는 것은 植樹義務의 機会가 될 뿐만 아니라 垂直增築을 許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미 令 第168條의 2에 不適合한 狀態가 된 것을 改善할 수 도 없는것임으로 다른 規定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内에서 垂直增築을 許容할 수 있는 것임. 끝

64. 27坪, 60坪 및 180坪의 垈地에서의 建築

(質疑要旨)

地籍法上의 面積 単位制度나 買賣去來의 慣習이 “坪”의 単位로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垈地面積의 最少限度를 定할때 “60坪”을 “200M²”로 規定한 것으로 본다면 幅員 12M 未滿의 道路에 接한 商業地域안의 登記上 60坪 垈地는 令 第159條에 適合한 垈地로 보아 建築이 可能하지 않은가?

(質疑者：建築士)

(回信內容)

建築 125~17718(76. 9. 1)

地籍法上 面積单位나 登記上の 面積单位가 “坪”으로 되어 있다 하드라도 建築法에서 “M²”를 単位로 하고 있으므로 60坪 即 198.³⁵M²인 商業地域안의 垒地는 令第159條의 規定(商業地域안의 垒地面積의 最少限度: 200M²)에 適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貴問의 27坪, 60坪 및 180坪의 垒地는 令 第142條 第11項 第1号中 “其他 垒地의 特殊性”에 該當시켜 建築許可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解説)

堡垒面積의 最少限度 基準에 適合하게 할 수 없는 特殊性에 對해서는 지난 6月号 会誌(16番, P-55)와 9月号 会誌(61番)에서 解説한바 있으며 이번에 한가지가 더 追加되는 셈이 된다.

質疑要旨에서 밝혔듯이 (質疑者의 質疑內容과는 다르게 表現되였지만) 우리의 觀念이나 買賣去來에서 뿐만 아니라 地籍法에서도 “坪”的 単位를 使用하고 있으며 堡地面積의 最少限度를 定할때 27坪을 90M²로, 60坪을 200M²로, 180坪을 600M²로 表記된 것이다. 그럼으로 商業地域에 있는 60坪의 垒地에 建築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으나 令 第159條의 規定에 “200坪M²”라고되어 있는 이상 “60坪(198.³⁵M²)의 垒地”를 “200M²의 垒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特殊性”的 하나로 보게 된 것이다.

이 質疑回信에 對해서는 各市·道에 示達하여 住居地域内の 27坪인 垒地·商業地域内の 12M未満道路邊에 있는 60坪의 垒地 및 自然綠地地域에 있는 180坪의 垒地는 令 第142條 第11項 第1号를 適用하여 建築許可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밝혀둔다.

65. 用途制限規定에 違背된 既存工場의 機械增設

(質疑要旨)

1969年 9月에當時의 建築法 第32條 但書의 規定에 依據 建築한 既存織物工場(住居地域内)에 機械의 増設이 可能한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內容)

建築 125~17930(76. 9. 3)

貴質疑上の 工場이 建築當時 適法하게 建築許可를 받아 建築된 것이고 動力의 馬力数가 令 第142條 第2項 “別表2”에서 制限한 基準(0.75KW)을 이미 넘었다면 貴質疑와 같은 機械의 增設은 可能한 것입니다. 끝

66. 令 第168條의 2 但書規定 適用에 있어서의 처마높이

(質疑要旨)

令 第168條의 2 但書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倉庫의 높이(벽돌造의 난간壁 上端까지)가 7M, 天井 높이 2.1M, 테두리보下端까지의 높이 1.95M일 때 테두리보下端까지가 처마높이임으로 이 附屬建物을 垒地境界線에 붙여서 建築할 수 있는가? 끝

(質疑者: 建築主)

(回信內容)

建築 125~19360(76. 9. 27)

令 第167條 第1項의 規定에 依據 隣接堡垒境界線으로 부터 떠어야 할 距離는 “建築物의 各部分” 으로 規定하고 있으므로 同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貴質疑 上의 建築物은 7M最高높이까지 包含되는 것이며, 令 第168條의 2 但書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貴質疑의 보밀까지의 높이를 처마높이로 보지 아니합니다. 끝

(解説)

令 第2條 第1項 第6号에서 地表面으로 부터 建築物의 지붕을 또는 이와 유사한 瓦가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上端까지의 높이를 “처마높이”라고 定義하고 있으나 이는 平지붕이 아닌 경우에 主로 該當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스라브지붕으로 된 建築物에서 보일 即 壁体의 上端까지를 처마높이로 보아 令 第168條의 2 但書規定을 適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스라브構造인 平지붕에서 처마높이를 굳이 定義한다면 “스라브의 下端까지”로 定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柱의 간격에 따라 하나의 建築物에도 보의 높이가 다르게 되며 따라서同一建築物에 처마높이는 여러 개가 되기 때문 等이다.

이와같이 스라브의 下端까지를 처마높이라고 規定하더라도 令 第168條의 2 但書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回信內容과 같이 日照에 영향을 주는 部分까지의 높이가 2M以下이어야 할것이다.

67. 住居地域에 있는 既存工場의 工作物 設置

(質疑內容)

適法하게 建築許可를 받아 住居地域内에 建築한 工場에 工作物(冷却機)을 設置하고자 할 때 令 第175條에서 工作物도 法 第53條 및 第53條의 3의 規定을 準用한다고 한 規定을 根據로 하여 工作物의 面積을 建築物의 延面積에 포함시켜 工作物의 建築許可를 不許할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士)

(回信內容)

建築 125~17958(76. 9. 4)

令 第175條의 規定은 工作物의 面積과 높이 等을 算定할 때에는 法 第53條의 規定에 依據 算定하고, 工作物을 法 第42條의 規定에 依據 措置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 第3條 第1項 및 第2項을 規定을 準用하도록 한것이나, 工作物의 設置는 建築物이 아님으로 令 第142條 第2項의 規定에는 関係없이 그 設置가 可能한 것이며 따라서 令 第142條 第10項과도 無關한 것입니다. 끝

(解說)

注油所와 같이 建築物을 建築하지 아니하여도 工作物만으로 그業을 嘗為하거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경우도 있으나 地域·地区에 依한 用途制限은 原則의 으로 建築物을 対象으로 하고 있다.

그럼으로 위와 같은 경우의 注油所는 工作物로서만 이루어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住居地域等에서 許可할 수 없지만 住居地域에 工場을 建築할 수 없다고 하여 建築當時 適法하게 許可를 받아 建築된 既存工場에 老朽해진 既存工場物을 다시 築造하는것을 不許할 수는 없는것이며,

令 第175條에서 工作物도 法 第53條等을 準用하게 한 것은 建蔽率의 算定時 工作物이 차지하는 面積을 建築面積에 句含하려는 것임으로 令 第142條 第10項 第1号의 延面積에 工作物이 차지하는 面積이 包含되는것이 아니다.

68. 基準未達垈地로 分割할 때의 建蔽率

(質疑要旨)

法 附則 第3項의 規定에 依據 垈地面積의 最小限度基準에 未達되게 分割할때 建蔽率의 規定에 違背된 경우에도 分割할 수 있는가?

(質疑者 : 建築主)

(回信內容)

建築 125~19594 (76. 9. 29)

法律 第2852号 (75. 12. 31) 改正建築法 附則 第3項의 規定에 依據 同法 施行當時 둘以上의 既存建築物이 있는 垈地를 建築物 單位로 分割하는 경우 垈地面積의 最少限度 規定을 適用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建蔽率의 規定에는 適合하여야 합니다. 끝

69. 하나의 建築物의 用途가 層別로 다를때의 駐車場設置規定

(質疑要旨)

하나의 垈地에 2棟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로서 延面積(2棟의 延面積의 合計)이 1,099M²이고 用途別面積이 아래와 같을 때 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하는가?

用途別 延面積

- 事務室 : 472M²
- 住居用 : 374M²
 - ※ 3個層에 있는 面積의 合計임.
- 店舗用 : 139 M²
- 地下待避施設 : 142 M²
- 其他部分은 보이라室·復道·階段 및 PENT House 等임.

計 (延面積) : 1,099 M²

* 質疑者は 事務室·共同住宅 및 販賣場等 駐車場設置對象 用途로 쓰이는 面積이 각각 1,000M² 以下임으로 令 第22條 第1項 第1号의 規定에 該當하지 않아 駐車場을 設置하지 않아도 된다는 意見을 달았음.

(質疑者 : 建築士?)

(回信內容)

建築 125~18343 (76. 9. 10)

하나의 垈地에 2棟으로 建築하는 質質疑上의 建築物은 販賣場·事務室 및 住居用으로 쓰이는 面積이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地下層·階段室 및 보이라室等은 主된 用途에 부속되는 것이지 別個의 用途로 볼 수 없는 것임으로 令 第22條 第1項 第1号의 規定에 依據 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합니다. 끝.

70. 住居地域내에 原動機가 있는 実驗室의 建築

(質疑要旨)

住居地域내에 있는 農業振興府 農工利用研究所 가同研究所가 있는 垈地에 岩力의 合計 2.5KW以上의 原動機를 使用하는 “農產物架工實驗室”을 建築하고자 할 때 그 建築이 可能한가?

(質疑者 : 京畿道)

(回信內容)

建築 444,1~19661 (76. 9. 30)

貴質疑上 原動機를 使用하는 建築物이 住居地域내에 位置한 農村振興府 農工利用研究所의 農產物架工實驗室과 같이 住居地域내에 建築할 수 있는 建築物에 부속되는 實驗室은 工場이나 作業場에 該當하는 建築物이 아님으로 主된 建築物의 用途制限規定에 따라 住居地域내에 建築할 수 있음. 끝